

# 경향교회 정관

## (개정 案)

### 「경향교회 정관」(全文)

「경향교회 정관」은 8장, 31조항과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명칭 및 소속, 목적, 소재지, 교회의 존립기간에 대하여

제2장 교인은 자격, 의무, 권리에 대하여

제3장 조직 및 기관은 조직, 기관에 대하여

제4장 공동의회는 구성, 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제5장 당회는 구성, 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의결사항, 안건의 처리에 대하여

제6장 제직회는 구성, 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보고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제7장 재정과 재산의 관리는 재정부, 예·결산, 재정지출, 재산의 관리, 재정운영 원칙과  
감사에 대하여

제8장 보칙은 개정, 규정, 지침 등, 기타사항, 회의록에 대하여

부칙은 시행일, 경과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및 소속)

- ①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향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 ②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신노회’에 소속된다.

### 제2조 (목적)

- ① 본 교회는 신·구약 성경과 교단 헌법에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전도, 교육과 봉사,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 ② 제1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구제, 사회복지 및 이에 부수되는 비영리·영리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3조 (소재지)

본 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75”에 둔다.

### 제4조 (존립기간)

본 교회의 존립기간은 설립 시부터 예수 재림 시까지로 한다.

## 제2장 교인

### 제5조 (자격)

본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취득한다. 본인이 이명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6조 (의무)

성경을 힘써 배우고 실천하며, 예배, 헌금과 봉사, 기도와 전도로 교회 발전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의무가 있으며, 품위와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고 교회의 치리에 따라야 한다.

### 제7조 (권리)

교인은 각종 회무에 참여하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3장 조직 및 기관

### 제8조 (조직)

- ① 본 교회의 대표는 담임목사로 하며,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 ② 본 교회는 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체로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를 둔다.

### 제9조 (기관)

본 교회는 교회운영에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장 공동의회

### 제10조 (구성)

- ① 공동의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본 교회 등록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성한다.
- ② 공동의회 의장은 본 교회 담임목사로 한다.
- ③ 공동의회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

### 제11조 (회의)

- ① 공동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 당회의 결의로 담임목사가 소집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이  
나 청원이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 3.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frac{1}{3}$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 ④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은 공동의회가 개최되는 날로부터 1주일 전(개최일이 주일인 경우에  
는 개최일을 포함한 날로부터 1주일 전을 말한다) 교회 주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  
여야 한다.

### 제12조 (개회 및 의결 정족수)

- ① 개회 정족수는 참석 회원으로 한다.
- ② 의결 정족수는 중요한 안건일 경우 참석회원  $\frac{2}{3}$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안건은 과반수로  
한다. 다만 담임목사의 청빙 및 신임은 참석회원  $\frac{2}{3}$  이상의 찬성과 무흠세례교인(입교인) 과반  
수의 승낙을 요한다.

### 제13조 (의결사항)

- ① 주요 안건
- 1. 담임목사의 청빙 및 신임
- 2. 장로의 선출 및 신임

3. 집사, 권사의 선출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교단의 가입과 탈퇴
6. 교회 정관의 개정
  - ② 일반 안건
1. 예산 및 결산의 확정
2. 주요 안건 외의 안건

## 제5장 당회

### 제14조 (구성)

- ① 당회는 담임목사, 장로로 구성한다.
- ② 당회장은 담임목사로 한다.
- ③ 서기는 장로 중에서 선임하며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④ 당회장의 유고 시에는 장로 임직순으로 하되, 다수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단, 재판 사건은 제외한다.

### 제15조 (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① 정기회의는 당회장이 소집하며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임시회의는 다음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장이 필요를 인정할 때
  2. 당회원 과반수가 청원할 때
  3. 제직회의 의결이 있거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frac{1}{3}$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 ③ 제2항 제2호~제3호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원이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 ④ 회의는 개최되는 날로부터 1주일 전(개최일이 주일인 경우에는 개최일을 포함한 날로부터 1주일 전을 말한다.)에 교회 주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개회 및 의결 정족수)

- ① 개회 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 ② 의결 정족수는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 제17조 (의결사항)

- ① 교회 정관, 규정, 지침 등의 제정 및 개정
- ② 교회 예·결산의 심의 및 의결
- ③ 교회 조직체계, 사역 조정 및 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④ 재산의 매매, 변경, 차입 및 담보제공 등 교회 재산의 관리
- ⑤ 목사의 청빙, 신임에 관한 심의

- ⑥ 권징안 심의
- ⑦ 상회와 관련된 업무
- ⑧ 기타 교회운영에 관한 사항

#### 제18조 (안건의 처리)

- ① 당회에 대한 요청 안건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토록 한다.
- ② 서기는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당회 소집 3일 전까지 전 당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③ 당회가 결정한 주요사항은 교회 주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장 제직회

#### 제19조 (구성)

- ① 제직회는 당회원과 집사, 권사로 구성한다. 당회는 각기 형편에 따라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집사와 전도사에게 제직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 ② 제직회장은 본 교회 담임목사로 하며, 서기는 제직회장이 임명한다.

#### 제20조 (회의)

- ① 제직회장은 재정집행 사항을 보고받기 위하여 매분기 익월에 제직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제직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제직회장이 소집할 때
  2. 제직회원  $\frac{1}{3}$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3. 당회가 요청할 때
- ③ 제직회의는 개최되는 날로부터 1주일 전(개최일이 주일인 경우에는 개최일을 포함한 날로부터 1주일 전을 말한다) 교회 주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21조 (개회 및 의결정족수)

- ① 개회 정족수는 참석 회원으로 한다.
- ② 의결정족수는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 제22조 (보고 및 의결사항)

- ① 공동의회, 당회에서 위임받은 재정 집행내용
- ② 각 부서의 추진업무
- ③ 공동의회 및 당회의 소집 요구
- ④ 기타 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장 재정 및 재산의 관리

### 제23조 (재정부)

교회 재정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재정부를 둔다.

- ① 재정부에는 부장 및 부원을 둔다.
- ② 재정부장은 당회의 의결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 ③ 재정부장과 부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4조 (예·결산)

-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예산의 편성은 예산위원회에서 하고, 당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 ③ 결산은 재정부가 하고 당회 심의 후 감사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확정한다.

### 제25조 (재정지출)

- ①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부장을 거쳐 담임목사의 최종 결재를 받아 집행 한다.
- ② 모든 재정지출은 반드시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결재를 받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은행 계좌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목적현금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단, 목적현금이 예산을 초과한 경우 그 금액은 당회의 결의로 목적 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재정관련 제반 서류는 완결 후 5년간 보존한다.

### 제26조 (재산의 관리)

- ① 교회의 재산은 개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적하거나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 ② 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예배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며, 그 외에는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③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보통재산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 ④ 모든 재산의 소유권 등기는 본 교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필요에 따라 제3자 명의로 해야 할 경우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7조 (재정운영 원칙과 감사)

- ① 교회의 재정은 투명해야 하며 재정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당회는 당해연도의 결산을 위해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회의 의결 후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 (개정)

- ① 정관 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다.
  1. 당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무흠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때
- ② 개정안은 담임목사가 2주 이상 공고 후 의결해야 한다.

### 제29조 (규정, 지침 등)

본 정관에 따른 규정, 지침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제정 및 개정은 당회에서 의결한다.

### 제30조 (정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

본 정관과 규정,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단 헌법 및 관례에 따른다.

### 제31조 (회의록)

공동의회, 당회 및 제직회 등의 서기는 회의의 개요와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담임목사와 각 회의 서기가 기명날인 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2조 (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 정관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